

측량업 양도·양수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양도인	대표자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상호	전화번호	
	업종	측량업등록번호	
	주된 영업소 소재지		
양수인	대표자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상호	전화번호	
	업종	등록번호	
	주된 영업소 소재지	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업의 양도·양수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2.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3.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4.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.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				
신고서 제출	→	접 수	→	민원사무 처리부등재	→	서류심사 및 실태조사	→	기안 · 결재	→	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	→	발 급
신고인		관할기관담당부서		관할기관담당부서		관할기관담당부서		관할기관담당부서		관할기관담당부서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